

##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100%이하</u>로 한다.</p> <p>2.(생략)</p>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90%이상으로</u> 한다.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 다만, 법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	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 <u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</p>	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</p>

<p>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생략) ②~⑩(생략)</p>	<p>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6.~10. (현행과 같음) ②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p>